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2서식] <신설 2020. 1. 9.>

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

지 정 번 호	제 호		
지 정 기 관			
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
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주 소			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 림 청 장 직인

유의사항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.
  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 나.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   다.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
2.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.
3.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는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